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352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6년 2월 9일
- 회 부 일 : 2026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과 문언을 일치시키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의 문언에 맞게 “납부독려”를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개정함(안 제2조제2항).
- 세입징수포상금의 대상에 과장급(시는 4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제외함(안 제2조제4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지방회계법」 등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2025. 11. 13. ~ 12. 3.) 결과: 의견있음(미반영).

제출기관	검토의견	검토결과
강남구	고액채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 및 고질 채납자 상담, 징수전담반 운영 등 채납 관리와 징수 업무 전반을 총괄 수행하고 있어 조례상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법령 및 조례상 특별한 공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및 방향 제시, 점검·분석 등 총괄적인 관리·감독 업무 등을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미반영

5. 검토 의견

가. 입법 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문언과 일치시키고, 세입징수포상금의 대상에 과장급(시는 4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여 지급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세 징수포상금 집행 분야 점검 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가 추상적이거나 관리직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사례는 이해충돌 및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2024. 4월~11월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포상금 집행 분야 점검 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점검결과 통보 및 자체 감·조사 실시 요청('25. 2월)
- 서울시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조사 실시 : 2025. 3. 4. ~ 7. 10.
-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조사담당관-10367, '25. 7. 11.)
 - 과장급(4급) 관리직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 조례상 '납부독려' 문언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과 맞추고, 「지속적인 납부독려」에 대한 유형과 기준 마련

- 세입징수포상금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유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지급대상은 “특별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입징수포상금 대상에서 과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되, 체납액의 직접 징수 등 특별 공적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는 본 개정안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1. 최근 3년 체납시세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

○ 서울특별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단위: 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합 계	437,363,150	491,387,540	585,520,110
과장(4급)-1명	2,815,010※	5,908,500	6,774,110
팀장(5급)-5명	25,377,700	27,705,740	31,570,570
직원-28명	192,355,140	198,983,110	213,207,530
시간선택임기제-6명	216,815,300	258,790,190	333,967,900

※ 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과장 포상금 미지급

※ 2개월에 1회 지급(일반직은 인당 월 50만원 상당/월 지급한도 125만원),

시간선택임기제는 인당 월 300만원 상당/월 지급한도 없음, 건당 3천만원 한도)

나. 세부내용 검토

1) 조문 정비의 적정성(안 제2조제2항)

- 안 제2조제2항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중 현행 “납부독려”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조문과 같이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하고, 2022년 제4조가 삭제된 관련 인용 조문을 본 개정안에서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은 상위법과 조문을 통일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임.
- “납부독려”로만 규정하는 것은 단순 독촉 행위나 체납처분도 포상금 사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는데, “지속적인”이라는 요건을 명문화하여 반복적·적극적 노력이 요구됨을 조문에 표현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2) 관리직(과장급 이상)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안 제2조제4항)

- 현행 조례는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 이상 관리직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징수 활동은 주로 6급(시는 6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7급)이하 공무원(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지급대상) ④	-----	----- -----과장급(시는 4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에게----- ----- -----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타 시·도 사례를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을 대부분 과장급(4급 또는 5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고 있음. 이는 세입징수포상금 제도가 실질적 징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타 시·도 사례 : 표 2 참조

- 과장급 이상 관리직은 조직의 총괄·관리 기능으로, 직접적 징수 활동과는 구분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확보 및 제도 남용 방지 측면에서 타당하나, '직접 징수', '구체적 체납 사건 특정', '위원회 공적 인정' 등 예외 조항은 구체적 기준을 수립 후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 타 시도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제도 비교 분석표〉

연번	시도별	지급기준	지급율	지급한도		비고
				건당	월	
1	서울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125만원	국장급(시는 3급) 이상 관리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전액정리보류 전담 체납 징수	4.3%	3,000만원	없음	
2	인천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분기 300만원	5급 이상 공무원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3	경기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50만원	500만원	과장급(도는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정리보류액 잔여시표 1~4년이상	6~2%	100만원	500만원	
4	부산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100만원	과장급(도는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5	대구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100만원	과장급(도는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6	대전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70만원	과장급(도는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7	광주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100만원	과장급(도는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8	울산	지난년도 체납액 1~2년 이상	1,5%	30만원	100만원 (*분기 300만원)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
9	세종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50만원	분기 300만원 (*임기제 500만원)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
10	강원	지난년도 체납액	2%	50만원	200만원	과장급(도는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정리보류 체납액	3%			
11	충북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50만원	200만원	과장급(도는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12	충남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분기 10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13	전북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100만원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14	전남	지난년도 체납액 1년~3년 이상 (*1천만원 초과 체납액 징수)	1,3,5%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임기제 300만원)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
15	경북	지난년도 체납액 1년~3년 이상	1,3,5%	30만원	100만원 (*임기제 30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16	경남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분기 300만원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17	제주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분기 30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제외
		정리보류 체납액	5%	3,000만원	없음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과장급 이상 관리직의 포상금 지급 제외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납부독려’ 문언 정비 또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사료됨.
- 다만, 예외 인정 기준, 지속성 판단 기준,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안정현
------	-----	-------	-----